

## 1999 會計 歲入 · 歲出 決算承認案

議案番號 20

提出年月日 : 2000. 6. 29

提 出 者 : 沙下區廳長

## 1. 提案理由

地方自治法제125조 및 地方財政法施行令제38조의 規定에 의거 前年度 歲入 · 歲出 決算에 대하여 議會의 承認을 얻고자 함.

## 2. 主要內容

## 가. 歲入 決算 總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124,362	145,759	127,261	18,498
일	반 회 계	98,544	115,078	100,993	14,085
과 목	지 방 세	20,257	26,596	21,477	5,119
	세 외 수입	25,744	35,932	26,966	8,966
	조정교부금	13,788	13,788	13,788	0
	보 조 금	37,130	37,137	37,137	0
	지방교부세	1,500	1,500	1,500	0
	지 방 채	125	125	125	0
특	별 회 계	25,818	30,681	26,268	4,413
과 목	의료보호기금	9,829	9,921	9,841	8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493	709	559	150
	주 차 장	5,150	9,513	5,365	4,148
	주거환경개선사업	587	753	718	35
	장립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9,737	9,763	9,763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2	22	22	0

## 나. 歲出 決算 總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15,672	8,690	124,362	106,653	11,390	6,319	
일 반 회 계	90,144	8,400	98,544	85,129	11,272	2,143	
과 목	일반 행정비	23,850	824	24,674	23,869	187	618
	사회 복지비	52,584	6,594	59,178	50,499	8,090	589
	경제 개발비	7,869	1,834	9,703	6,280	2,995	428
	민 방 위 비	226	0	226	209	0	17
	지원 및 기타경비	5,615	△852	4,763	4,272	0	491
특 별 회 계	25,528	290	25,818	21,524	118	4,176	
과 목	의료보호기금	9,829	0	9,829	9,819	0	1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493	0	493	169	0	324
	주차장특별회계	5,150	0	5,150	1,426	0	3,724
	주거환경개선사업	383	204	587	511	34	42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9,651	86	9,737	9,578	84	7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2	0	22	21	0	1

3. 관계법령 : 地方自治法제125조 및 地方財政法施行令제38조

4. 덧붙임 : '99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

1999會計年度 釜山廣域市沙下區

一般 및 特別會計 稅入歲出

# 決算檢査意見書

釜山廣域市 沙下區決算檢査委員



## I. '99 會計年度 決算檢査概要

1. 決算檢査기간 : 2000년 5월 29일 ~ 2000년 6월 17일(20일간)

### 2. 檢査항목

-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 3. 檢査방법

- '9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및 사하구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중점 검사하였으며,
- 중기재정계획과 주요 투융자심사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예산의 건전운용과 낭비성, 선심성 집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하였고,
- 검사방법은 관련서류를 중심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회계계리의 정확성, 신뢰성, 위법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실사·입회·대조를 실시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유지하였으며,

- 특히 '98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전년도 결산 심의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하였음.

## II. 決算의 確認

### 1. 세입·세출 결산

- '99 회계연도의 재정자립도는 47.9%로 전년도 45.4%에 다소 증가되었으나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등의 발굴이 요망됨.
- 세입결산 총괄에서 미수납액 처리의 다음연도 이월액 17,592,832,285원으로 전년도의 15,209,810,115원에 비하여 15.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이월액이 13,263,431,545원으로 전년도의 11,007,721,835원에 비하여 20.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이월액이 4,329,400,740원으로 전년도의 4,202,088,280원에 비하여 3%가 증가되었음.  
따라서 일반회계의 체납세 징수노력이 요망됨.
- 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출결산액은 124,361,632,050원이며 이월합계 11,389,655,940원으로 이를 명시이월 6,843,891,720원, 사고이월 1,188,280,310원, 계속비이월 3,357,483,910원, 보조금사용잔액 430,085,5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788,847,440원임.



## 2.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의 결산

계속비 사업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사업비 등 2건 3,357,483,910원 (일반회계 3,273,716,360원, 특별회계 83,767,550원)이며 명시이월비는 '99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등 22건 6,843,891,720원 (일반회계 6,809,858,920원, 특별회계 34,032,800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 1,188,280,310원임.

## 3. 예산전용·이체 사용

예산전용은 민원실 화장실 보수비 등 8건 16,340,000원(감액+증액)이며, 예산이체는 460,643,000원(감액+증액)으로 기구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한 것임

## 4.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 의료보호기금

세입 총결산액은 9,841,124,650원이며, 세출 총결산액은 9,818,828,490원이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80,099,150원임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 총결산액은 559,284,090원이며, 세출 총결산액은 169,350,900원이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150,068,470원임

○ 주차장

세입 총결산액은 5,364,722,658원이며, 세출 총결산액은 1,426,397,700원이며, 당해연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065,409,620원으로 1.6%가 증가되었음.

○ 주거환경 개선사업

세입 총결산액은 718,889,490원이며, 세출 총결산액은 510,732,91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신평동 도로개설공사비 34,032,8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음

○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세입결산 총액은 9,762,893,473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578,521,090원이며, 이중 83,767,550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결산 총액은 21,847,0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0,132,930원임





## 5. 기금의 결산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535,212,955원에서 수납액은 231,866,674원이며, 지출액은 35,069,960원이고 차인잔액은 732,009,669원이며 그내역은 복지장학기금 301,032,030원, 노인복지기금 187,747,373원, 재해대책기금 213,198,213원, 재난관리기금 30,032,053원임.

## 6. 채권 및 채무의 현재액 결산

### ○ 채권 현재액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555,169,110원으로서 전년도말 1,745,172,490원에 190,003,38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현재액중 재산매각채권 128,063,020원 임대차계약채권 465,000,000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대불채권 55,073,09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채권 907,033,000원임

### ○ 채무 현재액

채무는 4,353,797,790원이며, 전년도말 4,537,068,140원에 비해 183,270,350원이 감소하였음



###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 공유재산 현재액은 221,173,672천원 상당이며, 이중 토지 1,363,299㎡ 215,038,198천원, 건물 39,081㎡에 6,096,516천원, 선박 2척 10,162천원, 무체 재산권이 28,796천원임.
- 용도별 현황은 행정재산이 181,268,554천원(공공용재산 173,626,805천원, 공용재산 7,641,749천원)이며 잡종재산 7,659,852천원, 특별회계재산 32,245,266천원임.

### 8. 금고의 결산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한 구금고 취급 금융기관인 한빛은행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 재무회계규칙 제104조에 따라 비치한 정부등을 검사하였으나, 별다른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 Ⅲ. '99 會計年度 決算檢查意見

#### 1. 종합의견

- 재정 운영면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배정·집행 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투·융자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 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재정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투·융자 심사를 거쳐 재정운용이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세입면에서는 객관적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연간세입 목표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3차례에 걸쳐 예산을 편성 운용하였으며, 주민의 편의증진과 사하구 종합개발을 위해 보다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운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새로운 천년을 맞아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산문화회관, 사하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롤러스케이트장 등의 건립으로 인하여 경상적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구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분야별 감사의견

### 사 례 1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 1) 현황 및 문제점

징수결정액은 115,077,578천원이고 수납액이 100,992,543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87.7%로서 '98회계연도보다 징수율이 낮아졌으며, 예산액이 실제 수납되는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가용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2) 의 견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결산액 등을 비교하여 세수전망과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 편성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 례 2 징수유예 업무처리에 대하여

#### 1) 현황 및 문제점

- 과세물건 : 구평동 402-24, 공장용지 13,061㎡, 공장용지
- 공시지가 : 5,028,485천원
- 근저당 설정 : 부산은행 9,800,000천원, 신용보증기금  
1,552,500천원, 도시발전연구원 13,000천원





- '99년 10월 “오남수산”의 종합토지세 40,570천원을 징수유예 결정통보를 하면서 납세 담보물건에 대하여 근거당 설정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채권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징수유예를 하였으며, 2000년 2월 16일자로 징수유예 취소결정을 통보하고 미수납액으로 처리

## 2) 의 견

징수유예나 압류를 하기전에 우리구가 받아야 할 채권총액과 물건에 대한 채권확보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담보물건에 대한 변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징수유예 결정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 례 3 징수유예 및 분납에 대한 처리업무에 대하여

#### 1) 현황 및 문제점

- '98회계년도 결산시 징수유예분 440,004천원을 누락하였다가 '99년 8월 12일자 및 10월15일 징수결정을 하였고,
- '99회계연도 결산시 징수유예분 120,000천원을 누락하였다가 2000년 5월 30일 징수 결정하였음.

## 2) 의 견

징수유예 및 분납에 대한 처리업무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징수권이 발생하면 관계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일까지 절차에 따라 징수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그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징수부에서 차감 하지말고 별도의 장부에서 관리해야 할것임.

## 사 례 4 연내 집행불능 경비의 세출예산 계상

## 1) 현황 및 문제점

감천2동 5-2번지 등 4개소 공동변소 개축공사비 93,400천원, 하단1동 선창경로당 등 2개소 신축공사비 317,991천원, 세출 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함.

그러나 위의 경비 성격상 순수한 구비로 하는 사업으로 건립 기간이 적어도 3~4개월이 소요되어 결산추경 시점에서 볼 때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임

## 2) 의 견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의 여건변화로 본예산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것이며, 위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데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써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음.





**사 례 5**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 파악 곤란

**1) 현황 및 문제점**

-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의 매각 사업 수입의 징수결정과 미수납이 과소 결산되어 있으며,
- 공유재산의 증감 내역 및 현재액의 표시금액이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액과 감정가액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건물의 경우도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가액(공사비)으로 평가됨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현재액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2) 의 견**

- 공유재산의 등기, 등록 및 대장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 공유재산증감 보고서 작성시 기말잔액을 확정 한 후 이에 맞추어 증감액을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기초잔액에 증감액을 가감하여 기말잔액을 확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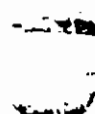
#### IV. 改善 및 建議事項

##### □ 실질적인 재정통제 강화

예산편성은 각부서의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하여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구정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요구액을 사정해야 하고, 세입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상황변화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시에는 그간의 실적이나 추진실태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예산요구서를 취합하고 조정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세입예산의 추계 근거자료를 분석 및 상황변화 등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철저히 하여 실적비교표와 잔여기간 예정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징수결정 시스템 개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징수권이 발생하면 징수결의를 하지않고 수납액이 확정되고 나서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미수납액을 알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착오부과 된 내용등을 파악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세수결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하구 세무과징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권이 발생하면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하고 이에 대한 세입징수 보고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세입보고 및 징수부 관리에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망 됨.





V. 검사결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작성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위의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0. 6. .

釜山廣域市 沙下區 決算檢査

代表委員 金 在 榮



委員 朴 洪 宙



委員 朴 炳 俊

